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28호 2014. 6. 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7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65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66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6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681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
공고 ----- 19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곶로 150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5. 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5-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가정동 5-148	서곶로 150	2009-08-28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2	인천 서구 가좌동 602-86	건지로 72	2009-08-28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 서구 연희동 684-2	연희로14번길 9-9	2010-11-05	연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검암동 661-5	승학로402번길 8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검암동 671-5	승학로382번길 14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백지지구 L1블럭	봉수대로 633	2009-07-01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06-7	청마로134번길 13-17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거월로 160	2009-09-22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626-1	드림로 595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1-2	보듬로 176	2012-10-25	"가슴에 붙도록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8-7	도담로 195	2012-10-25	"야무지고 탐스럽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 75블럭 4로트	봉화로 52-1	2009-09-22	봉화촌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 명명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73-1	원당대로 983-4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5-5	도담7로 8	2012-10-25	도담로에서 일곱번째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22-5, 1022-7	완정로45번안길 7	2008-12-31	완정로45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9-4	검단로114번안길 12	2012-10-25	검단로114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1	도곡로 249-1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1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34-4	드림로 406-9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29-2	도곡로 105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5.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연희로14번길 9-9외 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5-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연희동 684-2	연희로14번길 9-9	2014-05-21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가좌동 332-9	장고개로280번길 4-11	2014-05-22	건축물 멸실	
3	백석동 201-4	드림로209번길 4	2014-05-30	건축물 멸실	
4	마전동 1022-7	완정로45번안길 7	2014-05-30	건축물 멸실	
5	오류동 383-12	원당대로117번길 91	2014-05-30	건축물 멸실	
6	오류동 383-4, -11	원당대로117번길 93	2014-05-30	건축물 멸실	
7	오류동 386-5, -7, -9	원당대로117번길 96	2014-05-30	건축물 멸실	
8	오류동 385-2, -4	검단로 181	2014-05-30	건축물 멸실	
9	오류동 451-1	검단로188번길 2	2014-05-30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7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5.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경서동 736-7, 11, 12, 13, 15, 16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치(지번)	면적(m ²)			위치(지번)	면적(m ²)	
1	29	8 (736-16)	117.2	9, 10, 11과 공동개발(권장)	29	12 (736-11)	530.0	획지 합병
		9 (736-15)	100.0	8, 10, 11과 공동개발(권장)				
		10 (736-13)	119.6	8, 9, 11과 공동개발(권장)				
		11 (736-12)	96.0	8, 9, 10과 공동개발(권장)				
		12 (736-11)	97.2	13과 공동개발(권장)				
		13 (736-7)	247.6	12와 공동개발(권장)				
					13 (736-7)	247.6		

- ④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65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신현동 133-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현동 133-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번지
4. 사 업 개 요 : 공영주차장 설치 346㎡
5. 열 략 기 간 : 2014. 5.28. ~ 2014. 6. 12.
6. 열 략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 032-560-4852)
7.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8. 대 상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 (원본: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032-560-4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66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14.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7,474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14. 5. 30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m²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부동산 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4. 5. 30 ~ 6. 30.

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서식」 ⇒ 「지적/부동산」 란에 게재

마. 접수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4년 6월 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6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회의록 공개)
-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함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제10조(회의록의 공개) 신설
-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6.1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62, FAX 032-560-277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

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 이하”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4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5조 (생략)

<신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⑥ (생략)

<신설>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신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

④ -----위원 중에서-----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 - 681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리일자 : 2014. 5. 28.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72.749km²

○ 주요 내용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m ²)	연면적(m ²)	비고
학교	용 중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 지원청	계양구 서운동 109-70 일원	당초 : 9,581 변경 : 0 증감 : 감 9,581	당초 : 10,887 변경 : 0 증감 : 감 10,887	폐지
"	동 운 중학교	"	계양구 용중동 61-1 일원	당초 : 12,710 변경 : 0 증감 : 감 12,710	당초 : 14,689 변경 : 0 증감 : 감 14,689	"
"	봉 수 중학교	"	서구 심곡동 144-3 일원	당초 : 12,000 변경 : 0 증감 : 감 12,000	당초 : 12,755 변경 : 0 증감 : 감 12,755	"
"	오 봉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 지원청	남동구 남촌동 227 일원	당초 : 11,173 변경 : 0 증감 : 감 11,173	당초 : 11,587 변경 : 0 증감 : 감 11,587	"
"	관 모 초등학교	"	남동구 장수동 630-1 일원	당초 : 9,375 변경 : 0 증감 : 감 9,375	당초 : 7,752 변경 : 0 증감 : 감 7,752	"

3. 변경사유 : 사업(학교시설) 계획 취소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계양2동 주민센터, 서구청 도시개발과, 연희동 주민센터,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